

International Student Life Cycle (F-1/M-1)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1 Apply to a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Certified School

Student applies and is accepted to an SEVP-certified school.



2 Receive a Form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A student'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record is created and the student is then issued a Form I-20 by the 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 at the SEVP-certified school they have chosen to attend.



3 Pay the I-901 SEVIS Fee

Student must pay the I-901 SEVIS Fee at FMJFee.com.



6 Maintain Status During Program Study

Student must take a full course of study, not work without prior authorization and speak with their DSO if they cannot finish classes before their program end date, or have any other concerns about maintaining lawful status.



5 Arrive in the United States

Student arrives no more than 30 days before their program start date and presents their Form I-20 and valid student visa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the port of entry.



4 Apply for Student Visa

Student brings their Form I-20 and other required documents to apply for a student visa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7 Explore Post-Graduation Opportunities

A student has the option to transfer schools, change education levels (e.g., undergraduate to graduate), or if eligible, apply to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for post-completi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opportunities.



8 Depart the United States

An F-1 student has 60 days to depart the United States after completion of their program of study or OPT. An M-1 student has 30 days after completion of their program of study to depart.

Work Requirements(F-1 Students Only)

An F-1 student may work only when authorized, inclu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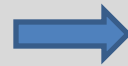
- On campus
- Off campus, if financially needed and with authorization from USCIS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integral to their program of study
- OPT-related to the student's major and with authorization by USCIS.

1. 뉴올리언즈신학교 입학지원

학생 본인

뉴올리언즈 신학교는 미 국토안보부의 SEVP 인가학교로 I-20 정식 발급이 가능한 학교로, 뉴올리언즈신학교 입학지원절차에 따라 입학지원을 합니다.

입학지원서 및 입학지원에 필요한 서류



I-20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사본 (학생 본인과 동반 가족)
- 비자 사본 (현재 비자가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동반 가족)
- 영문 재정 증명서 (본인 통장의 경우, 싱글은 통장 잔고 2만불 이상, 가족은 2만4천불 이상)
- 영문 재정 후원서 (재정 후원을 받을 경우, 후원인의 영문재정증명서를 후원증명서와 함께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현재 다른 학교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I-20 복사본(학생 본인 및 동반 가족)

2. I-20 발급

학교 DSO

- 뉴올리언즈신학교 입학심의 절차에 따라 입학 허가를 받고, I-20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와 함께 I-20를 발급 받습니다.
- I-20 란 유학을 원하는 분들이 미 영사관 또는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F1) 을 받아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돕는 미국 정부의 양식입니다.
- I-20 는 학교로부터 발급 받는 것이지만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및 시민국(BCIS)의 승인하에 발급되는 것이므로 모든 I-20 발급 및 승인의 최종권한은 BCIS에 있습니다.
- I-20 에는 학생 개인의 정보와 SEVIS 번호, 합격한 학교의 정보, 예상 학비 및 비용 등이 써 있으며, 반드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I-20 는 입학 지원서에 명기된 학생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 I-20 를 수령한 후 하단의 서명란에 학생 본인의 서명을 하고, 동반 가족의 I-20 서명은 F1 학생 본인이 해야 합니다. 서명한 학생 및 동반가족의 I-20 사본을 학교 DSO 에게 전자메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원본은 학생이 보관)

3. I-901 SEVIS 수수료 납부

4. F1 학생 비자 신청 및 발급

학생 본인

- I-20 는 미국체류에 있어서 합법적 체류 허가서이기는 하지만, 미국 입국을 결정하는데에 있어서는 필수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미국입국비자의 발급은 담당 영사의 자유재량이며, 비자 발급은 I-20 외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I-20 를 발급 받았다고 해서 학생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비자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승인을 받으면 학교에 통지한 후, 신입생 등록절차를 따라 학교 등록을 합니다.

I-20 와 F1 비자는 별개입니다. I-20 를 발급 받았다고 미국 입국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F1 비자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F1 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절차 및 준비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5. 미국 입국

학생 본인

- 미국 최초 입국은 I-20 에 기재된 학업 시작일 3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I-20에 명기된 학업 시작일 이후에 입국할 경우에는 학교의 DSO 에게 보고한 후, I-20 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 I-20 에 기재된 학업시작일이 2017년 8월 1일인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8월 1일 이후에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미국 입국시 여권, F1 학생비자와 I-20를 미 출입국 심사대의 심사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미국 입국 후, 학생은 미국에서 체류할 주소와 연락처를 학교에 통지해야 합니다.

6. I-20 유지

학생 본인

- 유효한 I-20 란 I-20 발급 받은 학교에서 Full-Time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Full-Time 학생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학기 해당 절차에 따라 수강등록을 해야 하며, 수강 미등록시 학교 DSO 는 SEVIS 시스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BCIS 로 정보가 전달되어 미국 체류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 학생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미국 이외의 국가로 여행을 가게 되거나, 한국 방문을 할 경우, 학교 DSO 에 이 사실을 공지하고 I-20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일 경우, 학교 DSO 의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전학을 갈 경우, 학교 DSO 에 전학갈 학교에서 받은 입학 허가서와 I-20 Transfer Form 을 신청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I-20 Transfer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 통지하지 않고, 전학을 가는 경우, I-20 이종 발급 등으로 최악의 경우, 추방 당할 수도 있습니다.

7. 학업 종료 후 후속 과정

8. 미국 출국

학생 본인

- I-20 를 발급 받은 후 모든 학업이 종료되어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60일 이내에 다른 과정으로 지원을 하거나 전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OPT 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학업 종료일 60일 이전에 학교의 DSO 에게 문의를 하여 절차에 따라 OPT 를 신청하면 됩니다.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학업 종료일 또는 OPT 종료일 60일 내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